

## 간통에 대한 구약성서의 견해

김남일(백석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글

### II. 구약성서에 나타난 간통죄

1. 간통(姦通) 금지 구절
2. 간통의 대가
3. 간통에 대한 신판(神判)

### III. 현대사회 그리스도인을 위한 적용

1. 간통은 과연 성적 자기 결정권의 영역인가?
2. 간통이 물고 올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보았는가?
3. 우리의 윤리적 행위의 잣대는 성경이다

### IV. 결 론

---

• ABSTRACT •

---

Controversy about adultery is hot.

Speak that people who insist human's self right regard that adultery uses individual's freedom and it falls behind in age that the country constrains this by law. But, the Old Testament makes clear conclusion about adultery. For it, adultery is unlawfulness and strains it is that is action to get God's judgement.

Therefore, last of story about adultery that come out in the Old Testament ends to almost tragedy. It is practice of very important creation command to protects family which God gives even though society is diversified and desire about individual's life is multiplied however and keeps happy assumpt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refer about unhappiness of community with individual who can be based on Old Testament's adultery injunction and when abolishes adultery, occur, and will insist prohibition of adultery that the Old Testament is prohibiting definitely.

**Key words** : Adultery, Leviticus, Abolition of Adulter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Law

---

## I. 들어가는 글

최근 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론이 다시 뜨겁다. 간통죄는 지난 1990년과 1993년, 2001년, 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에서 네 차례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가 다시 존폐의 도마에 오른 것은 사람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강한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sup>1)</sup>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既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간통죄가 가정을 유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으며 무절제한 성적인 남용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반면,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성(性)이란 개인의 결정권에 속하는 것인데 국가가 법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것이다.<sup>2)</sup> 이러한 양측의 공방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에도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2008년 10월 30일에도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1)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저스티스』, Vol.- No. 104(2008), 118-135.

2) 국민일보 2010년 2월 7일자.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존치와 폐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sup>3)</sup>

간통죄가 형법상 잘 성립되기 어려운 것은 그 죄의 성립요건 자체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간통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할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간통을 승낙 또는 중용했을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해 배우자가 간통죄로 고소할 때는 자기 배우자를 빼놓고 간통 상대방만을 고소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무조건 제기해야만 한다. 간통죄는 간통 사실을 알게 된 지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간통사실을 모른 채 5년이 지나면 뒤늦게 알았다더라도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sup>4)</sup>

여자의 간음에 관하여 흥미로운 표현이 구약성서에서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가령 “정말 모를 일이 네 가지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지나간 자리, 뱀이 바위 위를 기어간 자리, 배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간 자리, 사내가 젊은 여인을 거쳐 간 자리”라고 언급하고 “간음하는 여인의 행색도 그와 같아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씻고 ‘난 잘못된 일 없다고 시치미 뻔다’는 것이다(잠 30:20).

이러한 시대적 흐름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간통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간통죄의 존속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양측의 입장은 시대적인 흐름이나 개인주의적인 자유를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윤리적 기준은 성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에서 간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교조주의(敎條主義)적인 입장을 가지고 원칙

3) 네이버 백과사전 “간통죄”.

4) 인터넷신문 아시아경제, 2010년 1월 7일자.

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성서가 제시하는 원칙적인 가르침을 먼저 살펴보고 간통죄가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하여 더 깊은 사색을 한다면 자발적인 확신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성서에 나타난 간통죄에 대한 종교적 사회적 정의를 살펴보고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 함께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II. 구약성서에 나타난 간통죄

### 1. 간통(姦通) 금지 구절

성서에는 간통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간통은 “간음”, “통간” 등의 표현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히브리어는 대략 ‘쉐코베트’(שבכת), ‘나아프’(אנא), ‘바알’(לעב)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쉐코베트’는 ‘동거하다’는 의미인 ‘쉬카브’(בכש)에서 파생된 단어로 ‘함께 거주하면서 사는 것’을 주로 의미한다.<sup>5)</sup> ‘나아프’는 주로 일상적인 간음 및 은유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적 간음도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sup>6)</sup> 마지막으로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의 신화의 주인공인 바알을 나타내는데 칼형(Q)의 원래 의미는 ‘결혼하다, 다스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7)</sup> 그러나 이 단어들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된 것 같지는 않다. 그 당시의 간통 혹은 간음이란 종교적인 매춘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았기에<sup>8)</sup> 사회적인 간

5) William Williams, “בכש”,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4, ed. by van Gemerann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7), 101–102.

6) Gray H. Hall, “אנא”, *NIDOTTE*, Vol. 3, No. 2.

7) William T. Koopermans, “לעב”, *NIDOTTE*, Vol. 1, 681–683.

통과 별로 구분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레위기 18:20에서는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שכב)하면 네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며, 레위기 20:10에서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גנב)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한다. 에스겔 23:45에서는 비유적으로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음부, גנב) 재판함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음부, גנב)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라.”고 말한다.

잠언 6:29에서도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렇다. 남의 아내를 범하고서도 어찌 무사하기를 바라겠느냐?”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잠언 6:32에서도 “그처럼 남의 아내와 간통(גנב)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제 목숨을 끊는 짓이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간음(姦淫)에 관한 경구(警句)는 매우 자주 언급되고 있다. 십계명 중 “간음(גנב)하지 말라”(출애굽기 20:14), “간음(גנב)하지 말지니라.”(신명기 5:18)는 간단명료한 경구부터 간음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레위기 20:10의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와 같은 다양한 언급이 나타난다.<sup>9)</sup>

신명기 22:22에서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לעב)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로 나온다. 레위기 18:20에도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לעב)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고 하고, 신명기 22:23-24에서도 “처녀인 여자가 남

8) 여기에 대해서는 김남일, 『야웨와 바알』(서울: 살림출판사, 2002)을 참조하라.

9) 그 외에도 간음에 관한 경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신명기 5:18 간음하지 말지니라. 욕기 24:15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잠언 6:29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둘로 쳐 죽일 것이니”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다.

## 2. 간통의 대가

간통의 경우는 매우 준엄한 심판을 했다. 레위기 22장 22절에 의하면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했다. 또한 신명기 22장 22절에서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함으로서 간통죄는 한 개인의 죄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 치명적인 악이 될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1) 성서가 이토록 간통에 대하여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강력한 설이 있다. 그 하나는 간통은 그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입장이다.

먼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 사람은 굿프렌드(E. A. Goodfriend)로서 그 증거로 고대 근동의 여러 문헌에도 간통죄는 강력하게 금지되어 왔다는 것을 들고 있다.<sup>10)</sup> 그에 의하면 히타이트 법전, 아시리아 법전, 메소포타미아 법전, 아카디아 법전, 함무라비법전 등 거의 모든 고대의 법전에서 간통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종교적인 이유에서만 아니라 유목민 사회와 심지어 정주민(亭主民) 사회에서

10) Elaine Adler Goodfriend, “Adultery”,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day, 1992), 84.

조차 심각하게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악임을 지적하는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유목민사회보다 정주민 사회에 가까울수록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더욱 더 강력해지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sup>11)</sup>

사실 고대사회는 혈통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에 가까웠다. 그러므로 그 부족의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혈통의 혼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혈통 중심의 사회를 좀먹게 만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을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사회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과정에 가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초석(cornerstone)이었으므로 간통으로 인해서 이러한 근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관용을 보일 수 없었다.<sup>12)</sup> 그러므로 간통의 강력한 금지는 혈통 중심의 사회를 유지하고자 한 매우 중요한 계명이었을 것이다.<sup>13)</sup>

간통으로 인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에 관한 성서기자의 민감한 관심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 25장에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바알 브올을 섬긴 대가로 그 두령들의 목을 매디는 사건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자기 천막에 데리고 가서 행음하는 중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그들을 죽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염병으로 이스라엘이 이만 사천 명이나 죽을 정도로 심각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된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이 행동은 분명히 살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웨는 그의 행동을 “하나님을 위한 질투”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의 법은 간통의 경우 형벌의 예외 규정을 거의 두지 않는 반면 히타이트의 법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인이 있을 경우 다른 여자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보다 더 고대사회인 히타이트가 간통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받을 손실이 덜 중요했었다는 증거가 된다(Goodfriend, *ibid*, 84).

12) Gray, h. Hall, “**간통**”, *NIDOTTE*, Vol. 3, No. 3.

13) Westheimer, Ruth K ,Kaplan, Steve, 「(간통에서 동성애까지 권력자들을 둘러싼) 스캔들의 역사」, 김대웅 역(서울 : 이마고, 2004). 332.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한 남자를 택해서 결혼관계를 통해 한 여자를 취하고 그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할 것을 명령하셨다(창 1:27, 2:7, 2:20-25). 그러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서로에게 주신 한 대상(남자 혹은 여자)과만 사랑하고 성관계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간통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중대한 죄라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해석인데 여기에도 물론 함정은 있다. 현대인의 개념과 형법적인 개념으로서의 간통은 매우 민감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형법상 간통죄는 “성기의 접촉”이라는 구체적인 육체적 행동만을 정의하고 있지만 성경적 간통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 5:28)도 간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sup>14)</sup> 그러나 통전적인 의미로 볼 때 간통은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의도성(intention)도 포함되기에 이것 역시 성경에서 보면 간통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종류의 간통죄는 성서가 명확한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통을 제한적인 의미로 보더라도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간통죄는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반되는 중대한 죄가 되는 것이다(마 5: 27, 28, 32; 롬 7:3; 갈 5:19).

우리는 이것이 더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이다(롬 5:12, 16; 14:23). 이와 같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부패한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 결과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극도의 혼란이 우리사회에 임한 것이다.

14) 물론 민법 및(840조 1호) 최근의 판례(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 하, 2754)에 의하면 피할 수 없는 정황에 의한 간통죄 성립에 동의하는 경우도 있다.

## 2) 지속적인 하나님의 형벌 강조

성서는 간통한 사람들은 물론이요 그 후손까지도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구약성서에서 가장 유명한 간통 사건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불륜이다(삼하 11:1-27). 이 불륜의 결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삼 일간의 전염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둘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었다(삼하 12:18).

이 이야기는 개인의 간통이 국가적인 심판을 불러온 예로서 특히 더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아이의 죽음이다. 이 아이의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다윗의 행동에 관해서 주석가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 아이의 죽음이 주는 의미에 관해서는 비교적 언급이 없는 편이다. 이 아이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아이의 죽음은 간통죄에 대해서는 가장 소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13-17절을 보면 나단의 경고를 받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들이 죽은 것은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성서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록 간통죄가 당대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이기는 하나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함을 알 수 있다.

좀 더 후대로 가면 간통의 형벌이 지속적으로 주어짐을 더 강하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간음으로 딴 남자에게서 사생아를 낳은 여자는 공중 앞에 끌려 나가 벌을 받을 것이며, 사생아들은 아무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간음녀의 딸로 본 후대 사람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감미로운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집회서 23:22-28). 간음의 소

15) Robert D. Bergen, "1,2 Samu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7b(Broadman & Halman Publisher, 1996), 374-375.

생들은 장래가 없으며, 불법의 잠자리에서 낳은 자는 멸망하고 만다. 그들이 비록 오래 산다 하더라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으며, 결국은 노년기에 가서 영예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다(지혜서 3:16-18). 이것은 후기 유대인 공동체로 갈수록 헬라의 포용정책으로 인한 정체성을 상실을 두려워한 결과 더욱 더 강한 공동체적인 결합을 위한 도구로 보다 더 강한 계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6)</sup>

### 3. 간통에 대한 신판(神判)

#### 1) 간통한 사실을 밝히는 방법

야웨는 모세에게 아내가 간통한 것을 밝히는 절차를 가르쳐준다. 남편 몰래 외간 남자와 잠자리를 하여 몸을 더럽히고 숨기고 있는 데도 증인이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 않았을 경우, 남편은 아내를 사제에게 데리고 가서 보릿가루를 예물로 바친다. 사제는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야웨 앞에 세운다. 그리고 거룩한 물을 오지그릇에 떠놓고 성막 바닥에 있는 먼지를 긁어서 물에 탄 다음에, 그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한다. 그리고 나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곡식예물을 여인의 두 손바닥에 들려주고, 사제는 저주를 내려 고통을 주는 물을 손에 든 채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맹세를 시킨다. “외간 남자와 한 자리에 든 일이 있느냐? 유부녀로서 남편을 배신하고 몸을 더럽힌 일이 있느냐? 만일 그런 일이 없다면 저주를 내려 고통을 주는 이 물이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 물을 여인에게 마시게 했을 때 그 여인이 정말 몸을 더럽혀서 남편을 배신한 일이 있었다면, 그 저주를 내리는 물이 들어가면서 여인은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말라비틀어질 것이다(민 5:11-28).

16) Elaine Adler Goodfriend, “Adultery”,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85.

이와 같은 주술적 행위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된다. 아프리카 등지의 미분화된 사회에서 발견되는 “목에 전갈 물리기”나 “독약 마시기” 등은 일종의 주술적 범인 색출 방식이다(잠 6:27-29). 의심이 가는 사람 혹은 공동체의 일원을 모아 놓고 전갈을 목에 기어가게 한다. 그때 전갈은 범인의 목을 문다는 것이다.<sup>17)</sup> 이처럼 무시무시한 주술행위가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범죄혐의자들을 화로 주변에 모아 놓고 계란을 굽게 하여 그 계란이 튀는 곳에 범인이 있다는 속성도 전해진다.<sup>18)</sup>

민 5:11-31에 소개된 주술적 재판의식은 고대 근동의 법률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함무라비 법전(CH) 제132항은 간음죄로 의심받은 아내는 자신의 결백을 보이기 위해 강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sup>19)</sup> 왜 강물에 뛰어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혐의가 없다면 강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고, 혐의가 있다면 죽을 것이라고 믿은 것 같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법체계는 이처럼 가혹하지 않다. 여인에게 먹이는 쓴 물은 결코 독약이 아니다. 거룩하게 된 쓴 물(혹은 성막 바닥의 흙이 들어간 성수)을 먹임으로써, 그 쓴 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범죄행위를 가려낸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간음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율법조항은 고대 근동의 법률보다 한 차원 진보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20)</sup>

17) 유중현, *별난 인종, 별난 예로스*(서울: 성하출판사, 1996), 220.

18)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Vol. 121 No.-(2003), 92.

19) James B. Pritchard, "Law from Mesopotamia and Asis Minor," *Ancient Near Eastern Text*(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171.

20) 민수기 5장이 이야기는 간통이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판결로서 간통이 확실한 사건에 대한 판결과는 매우 다르다. 이것은 무고한 사람이 추정만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R. Dennis Cole, "Number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3b, Broadman & Halman Publisher, 1996, 114, 각주 105번).

## 2) 신체적 현상과 그 의미

쓴 물을 마신 여인에게 어떤 결과(징후)가 나타날까? 초월적인 수술의 효과를 믿었던 고대인들은 그 효과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고 믿었다. 본문은 그들의 믿음체계(belief system)를 보여준다. 그 여인에게 죄가 있으면 배가 붓고 성기로 상징되는 넓적다리가 늘어나 임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면 집으로 돌아가 무사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27-28절).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간통한 사람을 잡아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사람의 신체 가운데 넓적다리가 늘어날 리도 만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간통의 증거로 보려는 것 역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를 보려는 것은 아마도 더 사려 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도 주의 깊은 수술적 재판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증거가 분명한 사건이라면 그 처리는 간단할 것이다. 그러나 본문의 경우처럼 확실한 증인(혹은 증거)이 없거나 현장을 입증할 아무런 대안이 없을 경우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일단 재판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설사 여인에게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술적 효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여인의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늘어나거나 떨어져도 그것을 확인할 길이 거의 없다. 그 결과는 “여인이 임신할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에 달려있다. 결국 재판의 결과는 즉석에서 확인되기보다는 미래의 사건으로 미루어진다.

그렇다면 그 미래의 사건은 언제 확인되며, 만약 법정에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게 되면 그 여인은 다시 법정에서 서게 될 것인가? 민수기 5:11-31은 여인에게 그러한 일이 두 번 일어날 것을 예고하지 않는다.

여인에게는 단 한번이라도 간음죄로 법정에서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맞볼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여인은 혐의가 있든 없든 간에 이미 고통의 쓴맛을 맛보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여인에게 두 번의 고통을 안겨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여기에 본문의 핵심적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민수기 5:11-31에 규정된 재판절차는 간음죄를 사형에 처한다는 일반적(강제적) 법률로부터 선량한(?) 아내와 남편 모두를 보호하려는 법적 안전장치라고 보아야 한다.<sup>21)</sup>

그러나 이 구절은 후기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는 이혼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후주 1세기경에 랍비 조하난 벤 자카이(Jochanan Ben Zakkai)에 의해서 폐지되었다고 한다.<sup>22)</sup> 이 부분은 만일 현대사회가 간통죄를 무효화할 경우 우리사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성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3)</sup>

### III. 현대사회 그리스도인을 위한 적용

#### 1. 간통은 과연 성적 자기 결정권의 영역인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무엇인가? 법학자인 박혜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24)</sup> 즉 “형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강간과 추행의 죄’와 같

21) J. Milgrom,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35.

22) A. Noordtzi, “민수기”, 『반즈 주석』, 최종태 역(서울: 크리스천서적, 1991), 103-104.

23) 만일 간통죄를 없애고자 하는 명분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이혼의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격차이’가 다각적인 면에서 해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땅하지 않을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지 않겠는가?

24)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연구』, Vol. 21, No. 3

은 성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기술된다.” 그러나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비단 법학적인 영역에서뿐 아니라 정치, 사회, 심리, 인류, 국제관계학 등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요지는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과 이를 함께 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하며, 소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sup>25)</sup> 그래서 간통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두 인격체의 합의에 의한 선택임으로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구속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버트란드 러셀(Bertrand Russell)은 이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는 규칙이나 원리보다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딱딱하고 완고한 도덕법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sup>26)</sup> 즉 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상호 관계를 위해서 주어졌기에 그들이 속한 상황이 성관계를 맺음으로 상호 관계가 깊어지고 증진된다면 그들의 성행위는 어떤 틀과 규범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sup>27)</sup>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성(性)을 인간에게 주실 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성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성의 사용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구약성서에서 성적 인 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다’(עָדָ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것(knowing)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그러므로 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의

(2006), 229.

25) 대개 헌법 제10조와 11조의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제시되곤 하지만,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기도 한다(박혜진, 230).

26) Bertrand Russell, *Marriage and Morals*, 김영철 역 『결혼과 도덕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작작나무, 1997), 148-149.

27)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문제들』(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21.

28) Terence E. Fretheim, “עָדָה,” *NIDOTTE*, Vol. 2, 410. עָדָה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에

결정권에 의해서 즐기는 차원이 아닌 상대방을 알아가는 좀 더 복잡하고 가치 있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사려 깊게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책임에 관한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성적인 행위에 대한 전인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적인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책임 있는 헌신이 필요한데 이것까지도 책임의 범주 안에 넣고 있는가?<sup>29)</sup>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와 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가 되어야 한다. 소위 신도덕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사랑’이나 ‘책임’, ‘자유’와 같은 개념의 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성경의 계명의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장은 ‘인간성’, ‘복지’, ‘해방’과 같은 중요 주지(主旨)와 틀을 통하여 성경을 보려고 하는 해석과 경향이 유사하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보다는 그들의 신학적인 틀과 시각을 더 앞세우려는 위험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sup>30)</sup>

## 2. 간통이 몰고 올 사회적 여파를 고려해 보았는가?

### 1) 보편적인 영향

지난 2009년 11월 13일 한 신문기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인데 시각적이며 청각적인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앎을 말한다. 이 단어가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된 이유는 앎이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체득된 지식이라는 측면이 강한데, 성행위 자체가 단순한 유희를 넘어서서 전인적으로 상대방을 아는 행위라는 것을 의미한다(신원하, 22-23).

29) 헌신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뿐 아니라 감정적, 경제적, 지적 모든 면에서 자신의 전인격적인 삶을 상대방에게 맡기고 고통까지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한다(Henlee H. Barnett, *The New Theology and Mor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63).

30) 신원하, 23-24.

프랑스 사회당 여성 대선 후보자 세골렌 루와얄(Ségolène Royal)은 프아투-샤랑트 주의 수천 명의 십대 여학생들에게 “피임 방지약”을 보냄으로써 교육 당국자들을 화나게 했다는 것이다.<sup>31)</sup>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십대 여학생들에게 피임약을 나누어준 행위가 ‘십대의 성을 허용한다’는 차원에서 본 것이다. 물론 십대의 성과 임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제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으로 차라리 안전한 성행위를 하게 하자는 의도였지만 이 의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다. 현실이 비록 그렇다고 해도 피임약을 나누어 준 행위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사회 전반에 십대의 성을 허용한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 사회가 간통을 법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경우 그 허용의 여파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낙태는 불법이다”라고 선언하는 대전제에는 많은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전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확고부동한 선언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간통죄를 폐지한다”는 선언과 “간통죄는 유효하다”는 선언은 그 선언 자체가 미칠 사회적인 여파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sup>32)</sup>

간통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로 대변된다. 첫째, 간통죄는 헌법상 혼인 및 가족 제도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셋째, 간통죄는 일반 예방적 기능한다.<sup>33)</sup> 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아왔으며 그 실증

31) [www.larochelle.aeroport.fr](http://www.larochelle.aeroport.fr) 2009년 11월 13일.

32) 이수성, 「형법적 도덕성의 한계에 관하여」, 『법학』 제18권 제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77), 6, 113. 이수성은 간통죄가 이혼의 무질제한 남용이나 우리 사회를 반사회적인 가치로부터 지켜내거나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33) 조경애, “간통죄 폐지 아직 안 된다.” 『국회보』 제422호, 국회사무처, 2001, 12, 87 참조.

적인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의 법 감정은 간통죄가 존속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바<sup>34)</sup> 이 법은 성도덕과 가족 가치관을 중시하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존속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여성들의 권리 약화

정부의 간통죄 폐지 추진에 대한 여성계의 시각은 엇갈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공동대표는 “간통은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난 사적(私的)인 문제로, 국가가 나서서 형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며 간통죄는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사례는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간통에 대해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민사상 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추가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할 경우 피해자가 합리적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5)</sup>

여성단체연합과 다른 성향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도 ‘간통죄 폐지’에 손을 들었다. 김정숙 여협 회장은 “21세기에 ‘정조 관념’으로 남녀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뒤쳐진 생각인 것 같다”며 “간통죄라는 보호 장치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sup>36)</sup>

반면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도 있다. 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원은 “간통죄 폐지론자들의 논리도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간통죄는 가족

34) Ibid, 13.

35) 조선일보 사회면, 2010년 3월 18일자.

36) 아시아투데이 사회면, 2010년 3월 18일자.

해체, 자녀 문제까지 확대되는 사안”이라며 “친권·양육권 등 가족 문제를 잘 정비하고 난 후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도 있다”고 말했다.<sup>37)</sup>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1960년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여성단체들은 간통죄 폐지가 여성들의 권리는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지만 최근에는 간통으로 인한 이혼 후에 여성에게 돌아갈 합의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시대적인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제는 여자가 반드시 간통한 남자와의 결혼을 존속시킬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도움이 훨씬 더 실리적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리라고 본다.

그러나 실상은 매우 다르다.

지난 2007년 한 기관의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여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다.<sup>38)</sup> 실제로 이혼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치 전과자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41%), 남성보다 더 재혼하기 힘들다(32%),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27%) 등이다. 그 외에도 한 부모 가정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버지(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성역할모델 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독립적인 위치로의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부재로 인한 역기능적인 가정의 재생산이다. 아이가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다른 한 성의 역할모델의 부재로 인해서 정서적인 결핍이 생겼을 때, 그 결핍은 또 다른 결핍된 가정을 낳을 수 있다. 이 통계는 간통으로 인한 이혼 및 가정폭력 등 모든 사유에 다 해당되는

37) 매일경제 사회면, 2010년 3월 18일자.

38) <http://blog.naver.com/mebaltop8?Redirect=Log&logNo=130016478513>을 보라.

보편적인 결과다.

교회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만일 간통죄가 합법적으로 사라진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발생할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에 지나치게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감상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 3. 우리의 윤리적 행위의 잣대는 성경이다

기독교인들의 행위의 규범은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유일한 잣대이다(시 119:160).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일 뿐 아니라 성경 그 자체의 증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윤리는 곧 성서윤리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인 잣대는 바로 성경이어야만 한다고 본다.<sup>39)</sup>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에 앞서서 상황성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조셉 플레처나 존 로빈슨과 같은 상황윤리학자들의 견해인데 이들의 위험성은 성서보다는 상황성이 앞서게 되며 그 결과 상황에 대해서 성서를 적용 해석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황이 성서보다 앞서게 되므로 정 반대의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된다.

간통의 문제에 대해서도 성서는 분명하게 불허(不許)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약성서는 엄격하게 간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역시 하나님이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간통이라고 할지라도 관용적이거나 감상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

39) 문시영, 『기독교윤리이야기』 (서울: 한들출판사, 1996), 40.

의 확실한 판단을 멀리하고 상황적이며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는 감상주의적인 접근으로 간통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 IV. 결 론

현대사회가 다원화되어 가고 여성들의 권위가 상승되며, 개아성(個我性)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다보니 규범에 얽매이고 의무감을 수행하며,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게 된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무책임하게 망가지고 있다. 이 모든 원인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罪性)에서 오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듯이 비참하고 참담한 것이다. 인간의 행복권의 추구라는 명목 아래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간통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의 결과지 결코 성적 자기결정권의 산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 간통금지 조항은 유목민시대나 초기 부족국가시대에만 적용되었던 법률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가정(家庭)이 존재하고 있는 한 지켜지고 존속되어야 할 법률이다. 작게는 한 가정의 행복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와 세계 공동체의 행복을 지키는데 일조(一助)를 하는 법률이다. 만일 이 법률을 폐지하고 나서 인간이 만든 인륜(人倫)과 도덕성이 건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켜낼 수 있다면 폐지를 해도 무방할 것이나, 인간의 타락한 심성은 결코 그것을 지켜낼 수 없다. 구약성서 안에 나타나는 문화와 인류의 멸망 안에는 반드시 성적인 문제로 인한 혼란이 들어 있지 않은가?<sup>40)</sup>

40) 소돔성의 멸망(창 19장), 다윗의 범죄(삼하 11:1-27), 솔로몬의 실패(왕상 11:1-8) 등

누구나 다 건강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꾼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대로 살아간다면 간통으로 인한 가정불화는 없을 것이다. 또 설사 불화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남녀가 서로 책임적인 존재로 해결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간통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경건한 가정을 꾸미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엡 5:22-33)

---

많은 위인들과 역사적인 사건 뒤에는 그 당시의 타락한 성문화가 들어있다. 성서기자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성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 참고문헌

- 김남일. 『야웨와 바알』. 서울: 살림출판사, 2002.
- 문시영. 『기독교윤리이야기』. 서울: 한들출판사, 1996.
-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연구』 Vol. 21, No. 3. 2006.
- 신원하. 『교회가 꼭 대답해야 할 윤리문제들』.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유중현. 『별난 인종, 별난 에로스』. 서울: 성하출판사, 1996.
- 이수성. 『형법적 도덕성의 한계에 관하여』. 『법학』 제18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1977.
- 장병인. 『조선 중·후기 간통에 대한 규제의 강화』. 『한국사연구』 Vol. 121, No. -, 2003.
- 허일태. 『간통죄의 위헌성』. 『저스티스』 Vol. -, No. 104. 2008.
- Noordzij, A. 『민수기』. 최종태 역. 『만즈 주석』. 서울: 크리스천서적, 1991.
- Bertrand, R. *Marriage and Morals*. 김영철 역. 『결혼과 도덕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자작나무, 1997.
- Elaine Adler Goodfriend. “Adultery”.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ol. 1. New York: Doubleday, 1992.
- Gray, h. H. “גַּנֵּב”. *NIDOTTE* Vol. 3.
- Henlee, H. B. *The New Theology and Morality*.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7.
- James, B. P. “Law from Mesopotamia and Asis Minor”. *Ancient Near Eastern Tex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 Milgrom, J.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 Robert, D. B. “1,2 Samuel”.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7b. Broadman & Halman Publisher, 1996.
- R. Dennis Cole. “Number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Vol. 3b. Broadman & Halman Publisher, 1996.

Terence, E. F. “עָרִי”. *NIDOTTE*, Vol. 2.

Westheimer, R. K. & Kaplan, S. 김대웅 역. “(간통에서 동성애까지 권력자들을 둘러싼) 스캔들의 역사”. 서울 : 이마고, 2004.

William, w. “כִּכָּשׁ”.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Vol. 4, ed. by van Gemerann. Grand Rapid: Zondervann Publishing House, 1997.

william, T. K. “לֵעֹב”. *NIDOTTE*, Vol. 1.

국민일보 2010년 2월 7일자.

네이버 백과사전 “간통죄”.

매일경제 사회면, 2010년 3월 18일자.

아시아경제, 2010년 1월 7일자.

아시아투데이 사회면, 2010년 3월 18일자.

조선일보 사회면. 2010년 3월 18일자.

<http://blog.naver.com/mebaltop8?Redirect=Log&logNo=130016478513>

<http://www.larochelle.aeroport.fr> 2009년 11월 13일.

논문투고일 : 2010. 04. 01

심사개시일 : 2010. 05. 12

게재확정일 : 2010. 06. 03

---

• 국 문 초 록 •

---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간통이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영역  
임으로 국가가 법으로 구속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간통죄에 대한 단호하고도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  
다. 그것은 간통죄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불법적인 행동  
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에 나오는 간통에 대한 모든 사건은 항상 비극적인 결말을 보  
이고 있다. 그것은 비록 사회가 다원화되어지고 개인의 욕구에 대한 열망이 증  
가하고 있다고 하나 가족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구약성서를 기초로 해서 간통죄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고찰할 것이며,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 우리에게 발생  
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하여 구약성서를 근간으로 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단 이  
글의 한계는 구약성서의 입장을 밝히는 것임으로 다른 사회현상학적인 고찰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간통, 개인의 자유, 구약, 하나님의 심판, 국가

---